

2025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신청 공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구축 지원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동주거시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5. 2. .

동 대 문 구 청 장

I 사업 개요

가. 사업내용 :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한 안전시설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

나. 지원품목

○ 해당 지원품목 (7종)

- ① OBD¹⁾ 활용 배터리 이상징후 사전진단 공동관제시스템
- ② 열화상카메라 ③ 상방향 직수장치(고정형)
- ④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⑤ 간이스프링클러
- ⑥ 기존 CCTV 활용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 ⑦ 전기차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 ①, ⑥, ⑦은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 수요 신청이 있을 시, 서울시에 승인요청 후 선정된 대상지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시행

1) OBD : OBD(On Board Diagnostics)란 자동차의 전기/전자적인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 규격으로 고장 등에 대해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임.

다. 신청기간 : 2025. 2. 21.(금) ~ 10. 31.(금)

* 신청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라. 신청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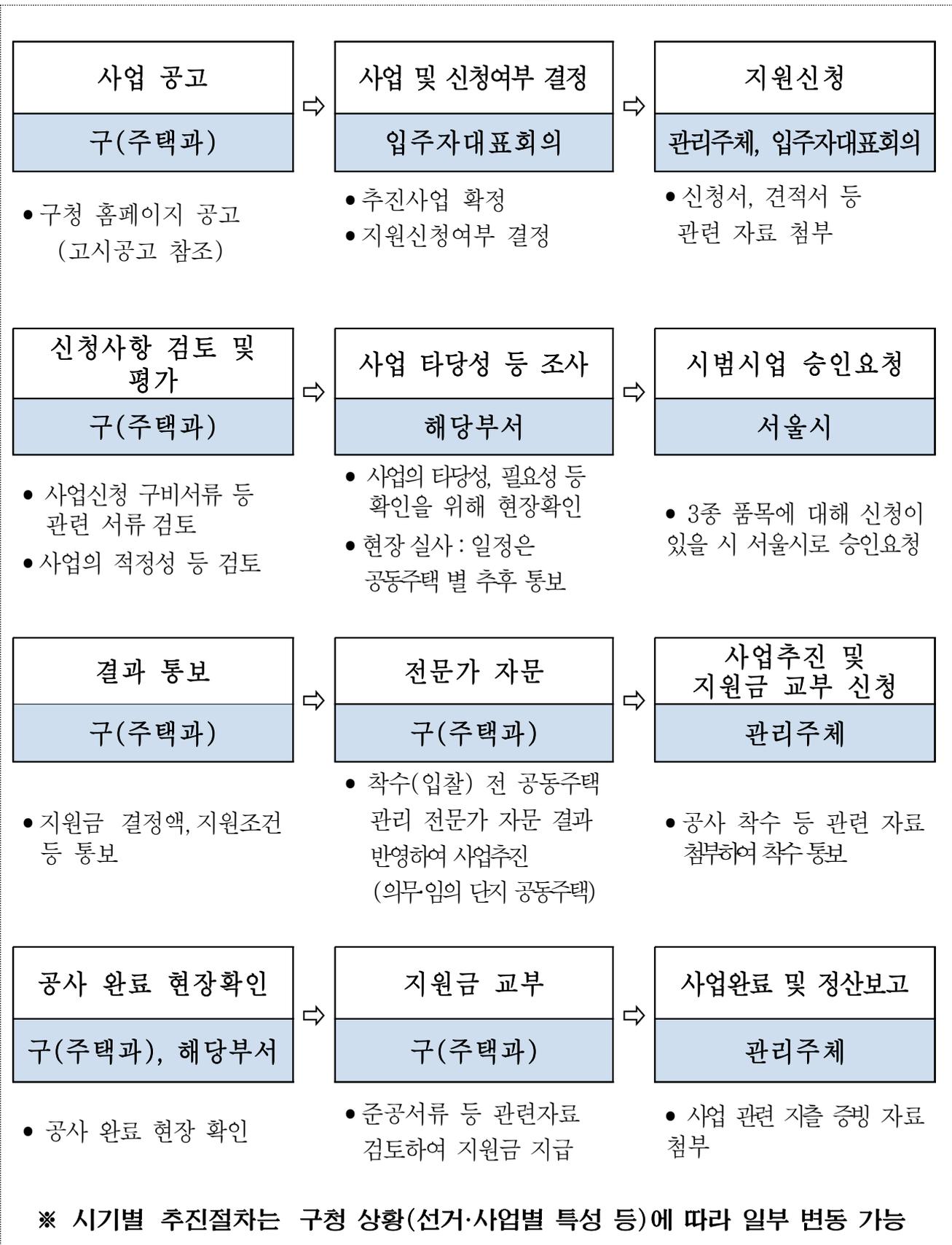
-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대상
 - (공동주거시설)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단지 중 신청단지
 - * 공동주거시설 :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 (소규모 주택)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ex.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원)

마. 지원한도 : 지하 주차면수 별 차등 지원

연번	주차면수	지원금 총액(개소당 상한액)
1	1,000면 이상	1,428 만원
2	500면 이상	1,000 만원
3	300면 이상	714 만원
4	200면 이상	571 만원
5	100면 이상	428 만원
6	100면 미만	357 만원

- 지원비율 = 보조금50:자부담50 (차등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II 추진절차



바. 지원 제외대상

- 1) 용도변경, 행위허가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2) 전년도 지원금 사업 신청 단지 중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3)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 4)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5)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사. 필수조건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택e) 필수 사용, 국민은행 보조금통장 개설 필요
- 안전시설 설치 후 5년 이내 철거하거나 고장 등 방치하여 의도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에 의거 지급한 보조금 환수 조치

※ 천재지변, 화재, 건물 철거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설치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안전시설 설치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40%	30%	20%	10%

아. 제출서류

- ①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설치 지원신청서(원본)
-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3분의 2이상 동의(서명) 필요
- ③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장소 도면
- ④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장소 현장사진
- ⑤ 견적서
 - ※ 총사업비(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비교견적서)
 - ※ 추후 정산 관련 제출 서류 별도로 안내

자. 신청 및 접수 : 동대문구청 4층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우편접수 : 2025. 10. 3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4층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02565

차. 결과발표 : 개별공지(구→단지), 시범사업(시→구→단지)

Ⅲ

유의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됩니다.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착수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추진일정은 구청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정과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 부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구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 2127-4664